

한국 분유 수출에 따른 제반 사항

□ 인도 조제분유 관련 법 규정

○ 인도 표준국(BIS) 관련 법령

- 인도 표준국(BIS)에서는 <가공식품부문 표준 설정>과 <제3자 인증제> 또는 <자발적 표준 인증제>를 실행하고 있으며, BIS표준에 부합하면 ISI마크를 획득해 제품 표시 가능함.

* 분유는 「BIS 강제 인증」이 필요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음

-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다소 까다로운 조제분유 관련 법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음

○ 광고 및 홍보 문구 주의사항

- 인도 조제분유의 홍보 및 광고활동에 사용되는 콘텐츠에는 ‘조제분유가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 대용식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’고 명시하고 있음

□ 인도 조제분유 라벨 규정

- 인도에서는 조제분유 제품에 모유가 유아에게 가장 적합함을 나타내는 내용과 조제분유의 부작용에 대하여 라벨에 직접 명시해야 함

□ 개정 인도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 주요 내용

- 인도 FSSAI는 지난 1월 14일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『Food Safety and Standards (Food Import) Regulations, 2016』 발표

○ 주요 내용 요약

1) 식품 수입 등록 관련

-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DGFT(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)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
- 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(Central Licensing Authority에서 발급)

-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% 이상이 남아 있어야함

2) 라이선스 정지 및 취소

- 만일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선스와 수출입 코드(Import-Export Code)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3) Customs House Agent 지정 의무

-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Customs House Agent(CHA)를 지정하여야 하며,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짐

4) 포장 및 라벨링

-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 될 경우,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해야 함

5) NOC 및 NCR 발급

- 식품 수입 허가를 받으면 No Objection Certificate(NOC)가 발급되며, 수입이 거부 되었을 경우에는 Non Conformance Report(NCR)가 발급됨

-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식품 수입업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이 더욱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

□ 인도 식품 수입 통관 절차

1) 수입 전 준비 사항(수입자)

- FSSAI 수입 라이선스 취득
- DGFT(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)로부터 수출입 코드(IE Cord) 발급
- Customs House Agent 지정

2) 샘플 검사 및 검역

- 모든 수입 식품은 항만보건소(Port Health Office)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농산물 및 육류제품은 항구, 공항, 혹은 국경 검역소 등에서 중금속 함량, 방부제 및 잔여농약 여부 등의 검역을 받게 됨
- 분유를 포함한 연유와 식용유, 유지, 콩류, 시리얼 제품,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예외 없이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함

3) 서류 제출절차 및 필요 서류

- 수입업자는 규정 된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 세관과 FSSAI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며, 서류가 통과되면 검역 절차 진행

필요서류 (조제분유 공통)

- DGFT로부터 수출입 코드(IE CODE) 발급
- 축산·농업·수산업·수입위생허가
- FSSAI 발행 수입 라이선스
- Food Authority 제품 승인
- EDI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Bill of Entry와 시험 진행 요구서 발행
- 원산지 증명서
- 성분 분석 증명서
- 최종 소비자에 대한 자가 선언서
- 세관신고용 송장
- B/L(Bill of Landing), A/B (Airway Bill)

4) NOC 교부

- 식품 수입 허가를 받으면 FSSAI로부터 NOC (No Objection Certificate)를 발급 받게 되며, 통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

5) 통관

- 세관에 관세 납부 등의 필요 행정 절차를 거치면 수입 통관이 완료 됨

□ 인도 조제분유 관세 정보

HS-Code	품목명	기본세율	협정세율	2019년 이후
1901.10-10	유아용 조제식료품	50% / kg	21% / kg	15% / kg

- 인도의 조제분유에 대한 기본관세는 1kg 당 50%로 상당히 높으나, 한-인도 협정세율 활용 시 1kg 당 19.5%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부터는 1kg 당 15%로 더욱 낮아질 예정으로 조제분유 수출 시 관세 부담이 낮아져 조제분유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한-인도 CEPA 적용여부 : 미양허

□ 조제분유 수출입 현황

HS-Code	품목명	구분	2011-2012	2012-2013	2013-2014	2014-2015
1901.10-10	유아용 조제식료품	수출액	31,210	18,640	27,720	39,480
		수입액	3,900	1,350	3,280	6,820